

로울스의 正義론과 시장경쟁의 正義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 승 훈

1. 시장경쟁과 사회정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사회생활인 경제활동은 사회적 분업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데 시장경제의 개인이 분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각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생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성 좋은 생업에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아마 수익성 떨어지는) 생업을 찾아야 한다. 결국 현실 시장경제의 사회적 분업은 각 개인이 경쟁에서 더 이상 도태당하지 않는 생업에 정착하는 형태로 편성된다. 그런데 소비자 기호의 진화나 생산부문의 혁신 등 여건의 변화는 생업별 수익성을 끊임없이 바꿈으로써 다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분업체제를 재편해 나아간다. 즉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동력이다.

누가 어떤 생업을 차지하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어지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분업을 이끄는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의 경쟁 규칙과 개인의 경쟁력이다. 경쟁 규칙은 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규칙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본질적 내용은 이익 취득 규칙인데 그 바탕은 사회의 사적 소유권 제도다. 경쟁력은 경쟁자의 능력과 노력을 합친 것으로서 상법과 노동법 등 사회적 여건의 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 경쟁 규칙,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 정의롭지 않다면 경쟁의 결과가 결정하는 각자의 몫도 정의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노트에서는 Rawls의 정의론이 시장경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 시각의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정의, 도의, 법제

Rawls는 사회적 협력에 참여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그 사회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라고 부른다.¹⁾ 사회 기본구조는 사회적 협력에 필요한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s)와 직무(offices)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위와 직무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개인이 어떤 지위 또는 직무를 점하는지에 따라서 수행하는 역할, 받는 대접, 그리고 얻는 보수가 다르므로 그 삶의 기대치도

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4

다르다. 사람들이 각자 삶에서 자신의 포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고 어떤 개인도 부당하게 소외당하여 그 삶의 기대치를 손상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의원칙이 기본구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Rawls의 생각이다. 즉 사회적 정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기본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규정하는 한 요소다.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행동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준다. 不正義(injustice)를 야기하는 주체는 가해자이고 당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다. 가해 주체가 기본구조와 같은 제도라면 사회 전체가 부정의를 일으키는 가해자다. 그러므로 부정의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데 이 때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는 분규 해결의 기준이다.

분규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회라면 구태여 正義도 필요 없다. Rawls는 모든 사람들의 자생적 필요가 서로 별다른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각각 조화 속에서 충족되어 각자 완전한 **좋음** (complete good)을 달성하는 사회는 정의 원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²⁾ 바꾸어 말하면 사회생활에서 분규가 발생할 때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사회 正義다. 현실의 사회생활에서는 곳곳에서 분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당하게 해결하는 기준으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각 개인에게는 사회적 정의개념(concept of justice) 이전에 자신만의 正義觀(conception of justice)이 있다. 개별 정의관은 정의로움에 대한 개인의 판단 기준으로서 각자 이 기준에 따라서 사회체제의 작동이나 사람들의 개별 행동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한다. 이 다양한 개별 관점이 서로 절충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 사회적 정의개념이다. 사회의 기본구조가 이렇게 합의된 정의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여 설정되고 작동할 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결국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현실적 방법은 정의원칙을 세부적 법조문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사회정의는 준법으로 귀결되고 사법당국이 정의 실현을 책임진다. 일단 사회정의가 법체계에 구체화된 구조를 갖추면 그와 다른 정의개념을 가진 사람들 간의 분쟁은 이 법체계에 따라서 처리된다. 정의와 법제는 원칙적으로 같은 것이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개의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감각적 차이가 불가피하다.

정의와 유사한 판단 기준으로는 도덕(moral)이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강제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의는 정의나 법제와 다르다. 많은 경우에 不正義는 不道德하지만 두 단어가 동의어는 아니다. 차용증을 쓰고서 돈을 빌리기도 갚기를 거부하면 不正義고 도와주기로 약속하고도 말을 바꾸면 不道德하나 不正義는 아니다. 차이를 지적하자면 不正義는 분노를 유발하는 단죄의 대상이고 가벼운 不道德은 경멸스럽지만 금지대상은 아니다.

2) Rather a society in which all can achieve their complete good, or in which there are no conflicting demands and the wants of all fit together without coercion into a harmonious plan of activity, is a society in a certain sense beyond justice. It has eliminated the occasions when the appeal to the principles of right and justice is necessary(p.249). 로울스는 해당 문단의 각주에서 마르크스가 꿈꾼 full communist society가 이러한 사회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3. Rawls의 정의론

Rawls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구조는 기본자유(basic liberties)를 규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equal)하게 통용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의 허용기준을 명시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그는 기본구조가 갖추어야 할 정의의 원칙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태초에 이러한 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는 가상적 실험을 제안한다.

Rawls가 제안한 사회계약의 가상적 실험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disinterested in one another's well being) 합리적 개인들이, 각자 자신이 어떠한 태생적 특성이나 경제 사회적 처지에 놓일지 철저히 모르는 無知 (veil of ignorance) 한 원초적 지위 (the Original Position)에서 정의 원칙을 채택한다고 설정한다. 이 설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편파성을 버리고 합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 Rawls는 이렇게 합의된 正義를 '공정성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불렀다.³⁾

Rawls는 '공정성의 정의'를 내걸고 모든 것을 버린 합리적 보편적 인간이라면 모두 동의하기 마련인 정의 원칙 (principles of justice) 으로

First Principle (*Equal Liberty*) Each person is to have an equal right to the most extensive total system of equal basic liberties compatible with a similar system of liberty for all.

Second Principl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a)(*Difference Principle*)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consistent with the just savings principle, and

(b)(*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ttached to offices and position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을 제안하였다.⁴⁾

Rawls는 제1원칙(동등자유)에서 허용되어야하는 기본자유(basic liberties)로 투표권과 공직 취임권을 포함한 정치적 자유(political liberty), 언론 및 집회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assembly), 양심 사상의 자유(liberty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thought), 인신의 자유(freedom of person), 개인재산을 보유할 권리(right to hold personal property), 재량적으로 체포당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arbitrary arrest and seizure)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다.

3) 이 점에서 Rawls의 '공정성의 정의'는 Rousseau의 '일반의지(general will)'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Rawls, *ibid*, p.266, Final Statement.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허용에 대한 것인데 최대한(most extensive) 허용 하되 공존가능(compatible)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기본자유라도 다른 기본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만 허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가 제한받아야 할 경우 두 사람의 자유가 공존 가능하려면 허용조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본자유가 항목 간, 또는 개인 간 서로 충돌할 때 모든 기본자유가 균형을 이루면서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Rawls는 이 시스템적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또 기본자유 의 제한은 다른 기본자유 의 허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Rawls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계약의 자유는 기본자유가 아니라고 선언하여 제1원칙 의 우선적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⁵⁾

제2원칙의 앞부분은 차등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라고도 부르는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최악조건집단(the least advantaged)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한다면 정당하다고 본다. 제1원칙이 기본자유 허용의 동등성을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 2원칙은 사회경제적 차등이 정의로운 경우를 규정한다. 뒷부분은 공정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조건이라고 하는데 기본 구조의 모든 정책과 지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동등하게 개방될 것을 요구한다.

이어서 Rawls는 정의원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규정하는 우선규칙(priority rule)을 제시하였다.

First Priority Rule (The Priority of Liberty) The principles of justice are to be ranked in lexical order and therefore the basic liberties can be restricted only for the sake of liberty. There are two cases:

- (a) a less extensive liberty must strengthen the total system of liberties shared by all;
- (b) a less than equal liberty must be acceptable to those with the lesser liberty.

Second Priority Rule (The Priority of Justice over Efficiency and Welfare)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is lexically prior to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to that of maximizing the sum of advantages; and fair opportunity is prior to the difference principle. There are two cases:

- (a) an inequality of opportunity must enhance the opportunities of those with the lesser opportunity;
- (b) an excessive rate of saving must on balance mitigate the burden of those bearing this hardship.

5) Of course, liberties are not on the list, for example, the right to own certain kinds of property (e.g. means of production) and freedom of contract as understood by the doctrine of laissez-faire are not basic; and so they are not protected by the priority of the first principle. p.54, Rawls, *ibid.*

무엇보다도 자유가 최우선 가치이고 정의가 효율과 복지에 우선하며, 공정기회가 차등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4. Rawls가 가장 우려한 부정의

일단 사회적 협력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가 정립되면 사람들은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직무와 지위(offices and positions)'에 배치된다. 개인 삶의 전망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초 **좋은** (social primary good)'인 각종 권리와 지위, 그리고 소득 및 재부⁶⁾는 직무와 지위 별로 배정되므로 어느 곳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전망(prospect)이 달라진다. Rawls는 '사회적 기초 **좋은**'의 개인별 배정, 또는 지위별 배치방식을 사회적 정의 실현을 좌우하는 핵심 기제로 파악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초 **좋은**' 가운데 성장 환경과 문화 및 교육, 그리고 타고난 재능 등처럼 해당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출생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많다. 어떻게 타고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전망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Rawls는 타고난 불운에 대한 책임을 도덕적으로 당사자에게 추궁할 수 없는 것처럼 행운에 대한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⁷⁾ 그런데 자연의 결정은 정의와 무관한 사실(fact)일 뿐이다. 그러나 Rawls는 인간 사회가 자연의 선택 결과인 사회적 그리고 태생적 불리함(disadvantages)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부정의(injustice)로 본다.⁸⁾ 성장 환경과 문화 및 교육, 그리고 타고난 재능 등은 개인 삶의 전망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Rawls는 이 '사회적 기초 **좋은**'의 수혜에서 태생적 불리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보정하지 않는 사회의 기본구조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⁹⁾

'사회적 태생적 불리함'의不正義를 방치한 자유방임은 결국 사회경제적 권력을 우연적 혜택을 누리는 일부에게 집중시킨다. 이 집중 현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일부가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실현과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을 침탈할 수 있도록 만든다. Rawls가 가장 우려한不正義는 사회경제적 권력의 부당한 집중을 유발하는 '사회적 태생적 불리함'의不正義를 방치하는 것이었다.

5. 제2 정의원칙과 사회협력의 상호성

6) Rawls는 다른 '기초 좋은'으로 건강과 열정, 지능과 상상, 그리고 자존감(self-respect) 등을 들고 있다. Rawls, ibid. p.54.

7) Rawls, ibid. p.63

8) Rawls, ibid. p.87.

9) 9월에 신학년이 시작하는 미국의 경우 9월생과 다음해 8월생은 같은 학년에 편성되는데 한 살 많은 9월생의 학업성취가 8월생보다 더 우수하고 이 우위가 졸업 이후 평생 소득수준의 격차에도 그대로 유지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 연구가 맞다면 사회는 8월생에 부정의를 가한다고 볼 수 있다. K. Bedard & E. Dhuey.

Rawls가 애초에 제시한 제2원칙은

Secon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a) reasonably expected to be to everyone's advantage, and (b)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¹⁰⁾

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to everyone's advantage'와 'open to all'의 의미를 나름대로 구체화하면서 모두에 인용한 최종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Natural Liberty : Efficiency + Equality as careers open to talents.

Liberal Equality : Efficiency + 'careers open to talents' & 'equality of fair opportunity'

Democratic Equality : 'maximize expectations of the least advantaged' + 'equality of fair opportunity'

*Natural Aristocracy : 'careers open to talents' + 'noblesse oblige'

만약 'open to all'을 'careers open to talents'로 이해하면 지위는 애초에 주어진 능력대로 배정될 것인데 결국 형식적 기회균등에 그친다. 이에 더하여 'everyone's advantage'를 efficiency로 파악하는 정의의 제2원칙을 Rawls는 Natural Liberty로 불렀다. 그런데 형식적 기회균등은 가문, 부모 유산이나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우연 요인(social contingencies)'의 효과를 방지하기 때문에 Rawls의 정의관과 배치된다. 사회 제도를 고치고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며 저소득층 교육을 개선 확대하는 등 '사회적 우연 요인'을 보정하면 기회균등은 형식적 균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인 'equality of fair opportunity'에 이른다. Rawls는 'open to all'을 'equality of fair opportunity'로, 그리고 'everyone's advantage'를 efficiency로 파악하는 제2원칙을 Liberal Equality라고 불렀다.

그런데 Rawls가 우려하는 '태생적 우연 요인(natural contingencies)'의 효과는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이 효과를 보정하는 과정은 '사회적 우연 요인'을 보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최상의 정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차선책**을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 결과 나온 것이 'everyone's advantage'를 efficiency 아닌 'maximize expectations of the least advantaged'로 해석하자는 발상이다. 결국 'open to all'을 'equality of fair opportunity'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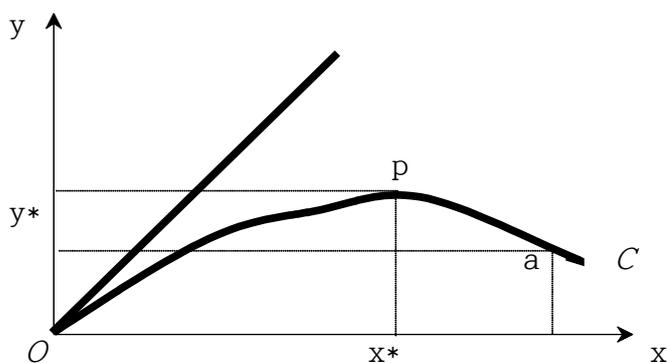
10) Rawls, *ibid.*, p.53. Rawls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장하려는 정의원칙이 더 일반적 개념인 "All social values - liberty and opportunity, income and wealth, and the social bases of self-respect - are to be distributed equally unless an unequal distribution of any, or all, of these values is to everyone's advantage."의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ibid.* p.54. 그런데 이 문안은 Rawls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평등에 기초함을 드러내고 있다.

리고 'everyone's advantage'를 'maximize expectations of the least advantaged'로 이해하면 차등원칙과 기회의 공정균등은 최종적 정의의 제2원칙으로 되는데 Rawls는 이것을 Democratic Equality라고 불렀다. 비록 차선책이지만 이것이 표방한 'maximize expectations of the least advantaged'는 efficiency를 실현한다.

물론 Natural Aristocracy처럼 'open to all'을 'careers open to talents'로, 그리고 'everyone's advantage'를 'noblesse oblige'로 이해하더라도 소득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지만 Rawls는 이 시스템을 불안정하다고 보고 폐기한다.

여기에서 유념할 점은 Rawls가 'fair equality of opportunity'를 보는 관점이다. Liberal Equality는 사회적 우연 요인이 야기한 불리함을 보정한 다음 기본 구조가 개인 능력에 따라서 각 지위에 채용하는 원칙을 내세우는 데 비하여 Rawls는 보정 조치 이후에도 능력이 부치는 사람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주장한다. 능력자를 배치하면 배제된 사람까지 그 역무로부터 혜택을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배제된 사람은 고난도 사회적 의무 수행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능력기준의 'fair equality of opportunity'는 진정한 'fair equality of opportunity'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¹¹⁾

제2원칙의 배경에는 공동이익(mutual advantage)을 추구하는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적 협력(social cooperation among equals)'이 '상호성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Rawls의 신념이 깔려 있다. Rawls는 상호성을



참여자 모두의 이익 보장으로 이해하는데¹²⁾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그림으로 설명된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the better advantaged와 the least advantaged의 이득을 나타내고 곡선 OC는 양자 협력으로 각자 얻는 이익의 궤적이다. 그리고 원점은 초기 평등상태에서 두 사람의 이익수준이다.

점 p의 협력은 the least advantaged의 이득을 최대치 y*에 이르게 하는 협력으로서 상호성 원칙과 제2원칙과 부합하는 협력이다. 점 a의 협력은 초기 평등상태인 점 O보다 두 사람 모두 더 이득을 얻기 때문에 역시 공동이익을 달성하지만 Rawls는 상

11) Rawls, *ibid.* p.73

12) Rawls, *ibid.* p.89. "representative men do not gain at one another's expense since only reciprocal advantages are allowed."

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각주 12)의 지적처럼 a의 협력은 the better advantaged가 the least advantaged의 피해를 딛고 이득을 보기 때문에 협력의 상호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Rawls는 이상적 상호성은 이익궤적이 그림의 45도선처럼 되는 경우라고 말한다.¹³⁾

6. 재분배를 통한 ‘property owning democracy’

그런데 사회 기본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 단계에서 ‘the better advantaged’의 expectations를 개선할 때 그 결과로 ‘the least advantaged’의 expectations도 함께 개선될지, 아니면 위축될지가 불확실할 경우가 많다. Rawls는 ‘개선할 것을 개선하지 못할’ 위험보다 ‘위축시킬’ 위험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안전한 해법으로는 ‘the better advantaged’와 ‘the least advantaged’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

이 차선책은 원초의 Democratic Equality와는 달리 efficiency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원래 원칙으로 내세운 “reasonably expected to be to everyone’s advantage”가 “gain of the least advantaged at the cost of the better advantaged”로 둔갑하였는데 Rawls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일부의 희생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이 결함을 방어하는 데 **Second Priority Rule (The Priority of Justice over Efficiency and Welfare)**이 사용되겠지만 Rawls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격차축소’의 정의원칙은 스스로 내세운 제2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로 된다.

현실적으로 이 격차를 줄이려면 조세-보조금 정책을 통한 대대적 소득재분배를 채택하기 마련이다. 이 발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Rawls는 경제학자 James Meade의 모형을 원용한다. Meade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지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골고루 보유하는 ‘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적 모형으로 추천한다.¹⁵⁾ 자본의 대부분을 장악한 소수가 균림하면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실현과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본의 분산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property-owning democracy’를 실현하려면 시장경제가 실현하는 소득분배가 계층별 격차를 심화시킬 때마다 재분배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야 한다.

Rawls는 ‘everyone’s advantage’를 efficiency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maximize

13) Rawls, *ibid.* p.88.

14) Rawls, *ibid.* p.68. “... there is a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the cases that fall short of the best arrangement. A society should try to avoid situations where the marginal contributions of those better off are negative, since, other things equal, this seems a greater fault than falling short of the best scheme when these contributions are positive.” Rawls는 A Theory of Justice 의 Chapter V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제기구에 대하여 깊게 논의하고 있다.

15) James Meade(1964), *Efficiency, Equality and the Ownership of Property.*

expectations of the least advantaged'로 바꾼 다음, 현실적으로 가장 정의로운 상태 실현이 어렵다는 사정을 내세워 소득재분배를 통한 격차 해소의 정의론으로 다시 한 번 원칙을 바꾼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의 제2원칙으로 '최악조건집단의 최대이익'보다 처음부터 '격차해소'의 원칙을 내세웠으면 이론 구성면에서 더 낫지 않았을까?

7. Aristotelian Principle

Rawls는 '타고난 재능'의 사적 소유에 회의적이지만 이 재능을 개발 발휘하는 노력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민생을 진보시키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자유의 허용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 J.S.Mill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¹⁶⁾ 그런데 재능 개발의 유인을 좀 특이한 시각에서 설명한다.

통상적으로는 경제주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까닭을 그렇게 개발한 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의 혜택을 타고난 사람이 그대로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Rawls는 이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원용하여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 능력을 행사하는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Aristotelian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Thus the Aristotelian Principle characterizes human beings as importantly moved not only by the pressure of bodily needs, but also by the desire to do things enjoyed simply for their own sake, at least *when the urgent and pressing wants are satisfied*.¹⁷⁾

라고 서술하였다.

그는 아마 이 원리에 입각하여 'the better advantaged'가 자신들의 능력 발휘의 노고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고 the least advantaged의 이익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Aristotelian Principle이 맞다면 정의의 제2원칙이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설명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특히 이탤릭 부분의 경우는 생존을 위한 사투가 해결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Aristotelian Principle은 the least advantaged 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the better advantaged 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개인이든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은 즐거움인 동시에 노고를 수반한다. 원초적 상태에서 자신의 노고가 결과적으로 남을 돕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도 행위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기꺼이 노고를 감당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듯싶다.

16) Rawls, *ibid.* pp.184-185.

17) Rawls, *ibid.* p.379, 이탤릭 부분은 필자 가필.

또 생존을 위한 사투가 해결된 만큼 사실 정의가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Aristotelian Principle은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는 별로 요긴할 것 같지 않은 원리다.

7. 경제학자적 시각의 평가와 비판

7.1 Rawls 정의론의 핵심 요약

7.1.1 기본 내용

Rawls의 정의관은 평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용해야 할 불평등을 구명하고자 한다. 제1원리는 수용하기로 한 불평등이 침해할 수 없는 평등의 영역이다. 기본 자유는 다른 기본 자유와 공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하고 각자 누리는 기본 자유의 내용은 모든 개인에게 평등해야한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최악혜택집단의 기대 삶을 평등시행 때보다 더 개선시킨다면 수용해야한다.

Rawls는 최악혜택집단의 기대 삶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불평등을 최선의 정의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그는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혜택집단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최악혜택집단의 기대 삶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불평등과 최대혜택과 최악혜택집단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인 불평등은 서로 별개다. Rawls가 이러한 논리적 비약의 오류를 꺾지 않는 까닭은 그가 기본적으로 정의의 핵심은 평등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 실현의 핵심 기제인 사회 기본구조는 사람들의 활동을 더 많은 편익 생산으로 이끌고 각자 그 생산물을 나누도록 관리하는 공적 규칙체계다. 이 기본구조가 정의원칙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에 따른 성과 분배는 정의로우므로 ‘공정성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매 경우 분배결과의 정의로움을 일일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가 된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기본구조를 정의원칙에 맞는 기구(institution)로 구체화해야 한다. Rawls는 시장경제의 배경 기구로서 배분(alloc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이전(transfer), 분배(distribution), 그리고 교환(exchange)을 담당하는 지부(branch)를 예시하였고, 이 기구들이 작동하는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는 정의롭다고 하였다.¹⁸⁾

이들 기구들은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태생적 우연 요인들이 빚는 소득과 재부의 집중을 시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최대혜택과 최악혜택집단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인 불평등을 추구하는 재분배를 시행한다.

7.1.2 평등한 사회적 협력의 상호성

18) Rawls, *ibid.* Chapter V.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awls는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적 협력은 협력 기여도 아닌 상호성에 입각한 보수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조건은 협력 참여를 강제할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갑은 을이나 병과 1:1로 협력할 때 총 5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병이 없다면 갑과 을은 각각 2.5씩 순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협력을 수행할 것이고 이 협력은 상호성을 충족할 것이다. 그런데 병이 나서서 갑과의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병은 을과 서로 경쟁을 해야 하므로 2.5보다 더 낮은 1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갑은 을이든 병이든 2.5보다 더 높은 몫을 주는 협력 상대방을 선택할 것인데 이 협력은 상호성 원칙에 어긋난다.

공동이익(mutual advantage)을 추구하는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적 협력(social cooperation among equals)’이 ‘상호성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Rawls의 신념을 지키려면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협력을 금지해야 한다. 즉 갑은 병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애초의 조건으로 을과 상호성 원칙을 지키는 협력을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즉 Rawls의 경제정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야 실현 가능하다.

7.2 경제 정의와 시장경쟁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제 정의는 각자 누릴 권리가 인정되는 것만 누리는 상황을 말한다. 일단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각자 이 규칙에 따라서 활동하고 그 결과 얻은 것을 정당하게 가진다. 이 소득분포가 불평등하고 편중되더라도 소득 취득 과정에서 사회가 인정한 취득규칙이 잘 지켜졌다면 정의로운 소득분배다. 그러므로 이 경제정의도 ‘순수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시장경쟁이 실현하는 소득분배가 일부 불운한 집단에게 기초필요(basic needs)도 충족시키지 못할 저소득을 배정할 경우에 적절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Rawls의 정의관도 이 생각의 한 줄기다. 그의 주장을 경제생활의 측면에서 요약하면 재분배를 외면하는 제도는 不正義다. 그런데 Rawls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개인들의 기본자유와 공정가치와 공정한 동등 기회의 보호를 보증할 수 있도록 자본의 소유분산을 유지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선언한다.

Rawls는 시장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타고난 재능일 경우가 많은데 이 ‘태생적 우연(natural contingencies)’을 얻은 개인이 이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도덕적 근거는 Rawls가 보기에 전무하다. 따라서 Rawls에게 경쟁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더라도 원천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고, 경쟁을 통한 총소득의 결정은 필요 충족과 적정 생활수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Rawls는 A Theory of Justice의 곳곳에서 시장경제를 굳이 사회주의로 체제로 대체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Rawls가 보기에 시장경쟁이 분배한 소득은 자연의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분배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과도한 소유 집중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본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되면 이들이 손에 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다른 일반인들 위에 균림할 위험이 커진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신세에 놓인 대중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기본자유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이익을 미미하게나마 나눠받는 준노예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려한 Rawls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권리와 자유방임시장적 계약의 자유를 제1원칙이 보호하는 기본자유에서 아예 배제한다.¹⁹⁾ 재산권과 시장거래의 자유는 시장경쟁의 기본질서인데 Rawls의 정의는 이 자유를 우선적 보호대상인 기본자유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달리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자유로 격하시키고 있다.

7.3 비판

7.3.1 재능과 능력의 문제

시장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 무엇이 가치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생산 공급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경쟁은 기본적으로 이 능력들 간에 벌어진다. 이 능력이 우수하면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 돈을 벌고 부실하면 돈만 날리고 손해 본다. 불행하게도 이 능력은 희소하여 시장경쟁에서 이겨 돈을 버는 사람들 보다는 도태당하고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경제는 번영하려면 사회 전체가 원하는 좋은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생산체제는 무엇이 가치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생산 공급하는 능력을 찾고 개발하고 발휘하는 데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이 능력이 희소한 만큼 사람마다 다투어 이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개인의 능력은 타고난 재능에 의존한다. 불운하게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지만 불운한 사람이 운 좋게 재능을 타고난 사람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 이 불리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Rawls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도덕적 견지에서 보유자의 것일 수 없는데도 이 요인이 소득분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장 명백한 부정의라고 주장한다.²⁰⁾ 그는 아예 타고난 재능을 보유자 아닌 사회 전체의 공

19) ... right to own means of production and freedom of contract as understood by the doctrine of laissez-faire are not basic, and so are not protected by the first principle. Rawls, *ibid.* p.54

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까지 말한다.²¹⁾

그런데 타고난 재능은 보유자의 노동을 통해서 발휘된다. 만약 Rawls의 정의관에 따라서 재능이 사회 전체의 공유자산으로 규정된다면 재능 보유자는 사회가 요구할 때마다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사회의 명령에 따라 노동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능 보유자는 일종의 노예와 다를 바 없어지므로 그의 '인신의 자유'는 억압당한다. Rawls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임금노예는 우려하면서 재능을 보유한 탓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동해야 하는 재능노예의 자유피탈은 외면한다. '인신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자유로서 정의의 제1원칙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므로 타고난 개인 재능을 사회의 공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Rawls의 정의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이것을 배양한 다음 필요할 때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또 유망한 가치 생산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결과는 큰 손실로 끝날 수도 있다. 재능을 타고 난 사람도 이 재능을 배양하고 활용하여 가치생산에 성공하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을 수없이 거친다. 가치를 파악하고 그 생산에 투자하는 주체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만드는 응분의 유인이 없다면 이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피폐해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천부의 재능을 그대로 묻어두고 아예 배양조차 하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우려에 대하여 Rawls는 Aristotelian Principle을 내세워 합리적 인간의 행동은 그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로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반론한다. 인간은 자신이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갖춘 능력을 펼치는 행동 그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재능보유자의 능력 개발과 발휘의 유인이 제대로 자극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딱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딱한 사정이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저지른 不正義 때문이라고 몰아간다면 과연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불이익을 당한 the least advantaged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가가 능력 개발유인을 오토하여 국가경제의 피폐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된다.

Rawls의 정의는 재능이 부족한 개인의 부실한 성취의 책임을 당사자 아닌 사회에 돌린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무책임의 풍조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의 성취가 부실할 때마다 이것이 태생적 불운 탓임을 내세워 성취가 좋은 사람들에게 뒷감당하라고 요구하는 사회라면 태생적 재능을 얻은 사람들마저도 스스로 좋은 성취를 거두기보다는 남에게 기대려고 나설 것이다.

20) Rawls, *ibid.* p.63

21) The difference principle represents, in effect, an agreement to regard the distribution of natural talents as in some respects a common asset and to share in the greater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 No one deserves his greater natural capacity nor merits a more favorable starting place in society. ... Instead, the basic structure can be arranged so that these contingencies work for the good of the least fortunate. Rawls, *ibid.* p.87

7.3.2 도덕과 정의

Rawls의 주장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재분배를 시행한다면 재분배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을 잃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재분배로 소득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不正義한 소득을 환수당하는 꼴이 된다. 즉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이 원죄 형태의不正義로 작용한다. 그러나 재능을 점지 받지 못한 것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듯 재능을 부여받은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의를 내세운 재분배를 고집하면 재능집단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추궁하는 꼴이 된다.

반면에 같은 재분배라도 재능 점지로 축복받은 집단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방식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출연은 마땅한 속죄행위가 아니라 존경받을 선행이 된다. Rawls는 재분배의 이론적 근거로서 Natural Aristocracy를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Democratic Equality를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존경받을 선행으로 추앙받을 행위를 원죄적 부정의를 용서받는 환수로 만들었다.

태생적 재능을 남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존경받을만하다. 만약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존경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즉 존경과 정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좋은 덕목이지만 결코 동일한 미덕은 아니다. 딱한 범죄자를 인정사정없이 가혹한 형벌에 처하는 판사는 정의롭기는 하겠지만 존경의 대상일지는 의문이다. 서민들이 남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不正義한 것도 아니다. 태생적 능력으로 남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noblesse oblige 등에 맡기는 기본구조를不正義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강제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 Rawls의 견해는 지나친 것 같다.

물론 noblesse oblige로 사회적 불화문제를 본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 기본구조에 어느 정도의 복지제도도 갖추지 않고 noblesse oblige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그런데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집단의 시혜가 아니라 제공받는 집단의 권리로 인식하는 Rawls의 정의론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Rawls는 복지혜택의 규모가 만족스럽더라도 표준형 복지제도 자체를

Welfare-state capitalism …… rejects the fair value of the political liberties, and while it has some concern for equality of opportunity, the policies necessary to achieve that are not followed. It permits very large inequalities in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productive assets and natural resources) so that the control of the economy and much of political life rests in few hands. And although, as the name "welfare-state capitalism" suggests, welfare provisions may be quite generous and guarantee a decent social minimum covering the basic

needs, a principle of reciprocity to regulate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is not recognized.²²⁾

와 같이 비난한다.

7.3.3 Rawls적 정의관의 내적 모순

Rawls는 자신이 '정의론'에서 제기한 정의의 제1 및 제2 원칙을 원초적 지위(the Original Position)의 인간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는 점을 다각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 설명이 두 가지 점에서 일관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1)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dvantaged' 와 'property owning democracy'의 불일치.

(2) 'self respect'와 'natural contingency'의 문제

self respect 부족도 자연의 선택일 수 있음. 이 불평등에 대한 Rawls의正義는?

자본집중이 사람들의 기본자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격차 해소에 인위적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은 분명히 경청할 만하다. 그런데 재분배가 정의로우려면 재분배 과정에서 이들의 상실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1. 핵심 논거는 타고난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 이 재능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을 모두 소유할 도덕적 근거가 없다는 인식이다. 도덕적 근거가 없는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도덕한가, 아니면 부정의인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스스로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는 존경할 만하다. 그렇다면 존경은 정의이고 경멸은 부정의인가?

5. 사적 소유 확대를 위한 경쟁을 부정의로 간주. 책임배제.

6. self respect는 매우 중요한 primary good으로서 life plan의 성공에 요긴하면서 동시에 성취감에서 생기는 결과이기도 함. 많은 primary goods가 life plan의 성공을 돕지만 성공의 핵심은 당사자의 지혜, 도덕심, 문화, 용기, 친화력 등 생활능력이고 이 중 많은 덕목은 타고나는 태생적 요인을 개발한 것임. 타고난 재능에 따른 소득분배의 방치가 부정의라면 각자 성취하는 자존감의 방치 또한 부정의 아닐까? 개인

22)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137-8.

의 보람과 life plan의 성공 역시 the least advantaged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재분배해야 하지 않나?

welfare capitalism비판. property owning democracy를 정의로 고수.

소득 취득의 정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장경쟁과 Rawls의 정의관은 합치 불가능.

Rawls의 정의는 물질적 궁핍을 핵심 의제로 다루면서 증산을 통한 극복을 외면하고 감산하더라도 나누는 정의만 고찰.

결국 사회적 협력으로 공동생산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산기여가 낮은 사람의 저소득을 고소득자가 도와주는 사회를 지향.

이 도움이 배려인가? 정의 실현인가? 의 차이. Rawls는 출발선의 불리함을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의로 접근. less advantaged가 억울한 것은 사실. 그러나 이것을 정의로 몰아가면 more advantaged도 억울해짐.

Veil of ignorance, 자신이 가진 상속재산 가족배경 좋은 교육, 타고난 재능을 일체 모르는 상태는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한 상태와 마찬가지. Rawls의 concept of justice는 Rousseau의 general will과 매우 유사함.

